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4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해양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 | 3 |

##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4일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을 수행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 공유수면에서의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미리 정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점용·사용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br>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br>①·② (현행과 같음)<br>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 ③ ~ ⑨ (생략)                                          | ④ ~ ⑩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을 이 법의 목적<sup>1)</sup>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sup>2)</sup>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sup>3)</sup>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풍황계측기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이에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4)</sup>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신·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4)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39호. 주요 내용은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sup>5)</sup>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정부 주도 적합입지 체계를 바탕으로, 질서있는 공유수면의 이용을 도모하며 해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18 |

5) 예시: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예시와 같이 적용례를 둘 경우 이 법 시행 이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처리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음.